

2026 대비 노동법(손승주) GS-2 7주차 모의고사 review

※ 수험 공부에 관하여

1. 2기의 끝이 보이는 지금, 이제까지의 모의고사 중 완성도 높은 답안이 가장 많았던 회차였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답안을 끝까지 완성하셨고, 판례 현출과 목차 구성도 좋아졌습니다. 한 주 한 주 쌓아 온 것이 답안 위에 나타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상 지칠 시기라는 생각이 들지만, 답안 완성도가 좋아지고 있을 때 탄력을 얻어서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2. 이제 35회 대비 수험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날도 점점 더워지고 체력도 마음도 가장 지치는 구간이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과 여기서 한 발 물러서는 사람의 결과는 분명히 갈립니다. 새로운 것에 무리한 욕심을 내기보다는 지금까지 쌓은 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데에 집중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판례를 단순히 '이해한 것 or 아는 것', 그리고 '훌륭하게 현출해내는 것'은 다릅니다

이번 회차에서 불리해 보이는 답안들의 공통 약점은 판례 현출도였습니다. 운송사업 시기 변경권,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대기발령 유지의 정당성 - 세 판례 모두 분량이 길어, 아는 것 같기도 한데... 확실히 아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답안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긴 판례일수록 처음부터 통째로 완벽하게 암기가 되지 않으므로, 판단요소를 끊어서(예: 대기발령 유지라면 '규정의 목적·기능 / 유지의 합리성 /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 합리적 기간') 키워드 단위로 잡아 외워보면 효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독을 올려가면서 조금씩 원문에 가까워지게 살을 붙여 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부족하거나 완벽하게 외우지 못한다면, 핵심만이라도 현출을 하긴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 모의시험 피드백

1. 1-(1)문

- 1) 근기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물음인데, 정작 위반죄의 조문(근기법 제110조)과 판례를 적지 않거나 위반죄 성립에 관한 포섭을 빠뜨린 답안이 많았습니다. 물음에서 묻는 것이 '위반의 죄책'인 만큼,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가 있으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까지 현출하고, 사안에서 위반죄 성립 여부를 사안의 적용 및 결론에서 명시적으로 마무리지어 주셔야 합니다.
- 2) 운송사업 판례의 현출이 가장 약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처럼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한 휴가 청구 기한은 대체근로자 확보에 소요되는 합리적 기간에 관한 노사 합의의 결과물이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지키지 않은 휴가 청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사용자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흐름을 키워드 단위로라도 외워 둥시다.

2. 1-(2)문

- 1) 이 문제는 4개 사유를 시점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포섭의 핵심이었습니다. 구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된 2017. 3. 30.을 경계로, 그 전의 신뢰에 기한 제1·2사유는 잘못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그 이후의 제3사유와 판결과 무관한 근무태만인 제4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됩니다. 사유마다 쟁점을 따로 검토하지 않고 뭉뚱그린 답안이 많았으니(출제자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사유를 시점·성질별로 분리해서 차근차근 포섭으로 엮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을 못 잡겠다면 예시답안을 여러 번 읽으며 이해해보세요.

2) 목차에서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나 징계권의 근거(근기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를 빠뜨린 답안이 적지 않았습니다. 징계는 정당한 이유를 요한다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출발점이므로 조문을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여담이지만 조문을 쓰실 때 법 이름을 안 쓰시고 “제 몇조 제 몇항”만 쓰시는 분, 조항호 앞에 “제”를 빠뜨리고 그냥 “몇항 몇호”만 쓰시는 분들 등이 있습니다. 반복된다 생각이 들더라도 어떤 법인지 반드시 매번 써주시길 바라고, 가급적 “제” 몇항 “제” 몇호로 기본적인 포맷에 맞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3. 2문

1) 대기발령 ‘유지’의 정당성은 대부분 잘 쓰셨으나, 그 앞 단계인 대기발령 ‘자체’의 정당성에 관한 포섭을 누락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① 대기발령 당시에는 경영형편상 과원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 ② 고용승계 이후 과원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장기간 유지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두 단계 구조이므로, 첫 단계를 건너뛰면 논리가 좀 약해집니다.

2) 대기발령 자체의 정당성을 포섭할 때,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뿐 아니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를 짧게라도 언급한 답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론에 적은 ‘협의 절차’ 요소를 포섭에서도 한 줄 정도만 살려줘도 완성도가 꽤 많이 올라갑니다. 또 부당 대기발령의 구제에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한 임금청구를 빠뜨린 답안이 많았으니 구제 단계의 조문까지 함께 챙겨주세요.

3) 한편 대기발령 이후 당연퇴직(취업규칙상 3개월 경과 시 해고) 쟁점을 끌어온 답안이 일부 있었으나, 이 문제의 물음은 ‘대기발령 유지가 정당한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묻지 않은 쟁점을 늘리기보다, 물음의 범위 안에서 대기발령 자체와 유지의 정당성을 단계적으로 짚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문제에서 완벽한 암기와 빠른 필속으로 100% 예시답안에 있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라면, (틀린 내용을 서술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이런 부분까지 서술해주실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시험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음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4. 결

적용과정에서 디테일을 챙기고 풍부하게 서술하는 것도 좋으나, 넘버링이나 문단별 띄우기, 목차화를 적극 활용해 가시성을 확보하면 채점자가 답안의 구조를 한눈에 보기 편리합니다. 끝까지 답안을 완성해 내신 이번 회차의 모습이 현재 여러분의 실력을 가장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답안을 펼쳐 두고, 세 판례의 ‘판단요소’를 각각 짧은 키워드 묶음으로 옮겨 적은 뒤, 본인 답안에서 그 요소가 몇 개나 살아 있는지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만 살아 있었다면 나머지 절반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면 되고, 대부분 살아 있었다면 이제 그 감각을 시험장까지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끝까지 힘내서 2기 마무리를 하십시오!